의정부우편집중국 2025년 가을걷이 기간제 우정실무원 수시 추가 채용 공고

의정부우편집중국에서 근무할 기간제 우정실무원 수시 추가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1. 14.

의정부우편집중국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근무 형태	채용 예정 인원	담당업무	비고
기간제 우정실무원 (일반)	중근 (14:00~23:00)	1명	ㅇ 우편물 상·하차 작업(30kg물건 상·하차 가능 체력 요함) ㅇ 운송용기(롤파렛,평파렛,우편자루 등) 운반 및 정리 작업 ㅇ 우편물 구분 및 특수, 발착 지원 등 기타 부대업무	-
	야근 (22:30~익07:30)	2명		-

※ 근무 예정 부서(근무지역): 의정부우편집중국(경기도 의정부시 산단로98번길 65)

2. 근무 조건

ㅇ 신분: 기간제 우정실무원(비공무원)

ㅇ 근로계약기간: 2025.11.24.(월) ~ 2025.12.23.(화)까지(한시적 채용)

※ 산업안전교육(반드시 참석해야함)

ㅇ 2025.11.24.(월) 13:00 ~ 17:00(4시간)

ㅇ 보수(기본급+수당)

- 기본급: 시급 10,030원(22시~익06시는 야간 시급 적용, 주휴수당 있음)
- 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직무수당, 가족수당(해당자한), 급식비
- 기타: 4대보험(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가입

ㅇ 근무시간: 주 5일 / 1일 8시간

- 휴게시간: 4시간 근로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

3. 응시 자격 및 요건

※ 아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함.

가. 응시연령: 원서접수마감일 기준 현재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62조(근무상한 연령)
- 공무직근로자 등의 근무상한 연령은 60세로 한다.
- 근로자는 근무 상한 연령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 근무할 수 있다.

※ 단, 관리 규정 제62조 3항에 따라 근무상한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

나. 외국인 및 복수 국적자는 응시 불가

다. 응시자격 제한

- 우정사업조직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최종시험일 현재 우편관계법령 또는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응시 불가
- 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시험 방법

ㅇ 서류 전형

- 응시자의 자격요건, 결격 사유 등을 심사하여 적격·부적격 여부 판단
- 제출된 서류 작성의 성실성 평가

5. 서류 접수 기간

가. 서류교부: **알바몬 및 의정부우편집중국 누리집**에서
자사 양식을 내려받아 사용

나. 공고기간: 2025.11.14.(금) ~ 2025.11.20.(목)

다. 접수기간: 2025.11.14.(금) ~ 2025.11.20.(목) 17시까지
※ 방문접수시간: 평일 09:00 ~ 18:00까지(11:30 ~ 13:00 접수불가)

라. 접수처: 의정부우편집중국 2층 총괄계(031-850-0618)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산단로98번길 65 의정부우편집중국 우) 11787
(전자우편 접수시) tax40007620@korea.kr

마. 접수방법: 온라인(알바몬), E-mail, 방문 접수
- 모든 접수분은 2025.11.20.(목) 17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E-mail: tax40007620@korea.kr

※ E-mail 접수시 응시서류의 서명을 반드시 기재 후 스캔하여 첨부하여야 함.

※ 채용부서의 접수 확인 답신이 없는 경우, 기한 내 채용부서를 통해 접수 완료 여부 확인

6. 제출서류: 반드시 자사 양식사용

가. 응시원서 1부

나. 이력서 1부

다. 자기소개서 1부

라.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1부

마. 범죄사실 부존재 확인서 1부

바. 공정채용확인서 1부

7. 시험 일정 및 합격자 발표

가. 모집공고: 2025.11.14.(금) ~ 2025.11.20.(목)

나. 응시원서 접수 기간: 2025.11.14.(금) ~ 2025.11.20.(목) 17시까지

다. 합격자 발표: 2025.11.21.(금) 17시 이후 **※ 개별통보**

8. 합격자 결정방법

가. 서류전형 합격 후 개별통보

나. 예비합격자 선발: 응시인원 중 채용인원을 초과한 인원에 대해서는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예비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9. 기타사항

가. 서류전형 응시인원이 채용인원에 초과되거나 이하인 경우에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거나, 선발예정 인원보다 채용인원을 축소하여 선발할 수 있습니다.

나.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이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최종 합격자 통지 후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격(결격 사유)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야간근로자의 경우 합격 후, 특수건강검진에서 야간근로 부적합 판정 시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 되지 못한 응시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의 다음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

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의정부우편집중국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의정부우편집중국 방문신청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리며, 반환에 소용되는 비용은 구인자가 부담합니다.

마. 응시서류에는 반드시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등)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응시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바.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근로가 불가한 경우 예비합격자 차순위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정부우편집중국 물류총괄과 총괄계(031-850-061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